

의 안 번 호	1646	<b>【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</b> <b>심 사 보 고 서</b>
------------	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. 7. 3.(금), 강혜경 의원 외 6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7. 3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7. 17.(금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강혜경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“재위탁”, “재계약” 근거 마련과 동의안 제출 기한·기준을 명시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와 사무 추진 간소화로 안정적인 민간위탁 행정 여건을 마련 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“재위탁”, “재계약”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 3호, 4호)
- 의회의 동의 기한 설정-위탁예정 30일전까지 동의(안 제6조)
-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할 내용 신설(안 제7조)
  - 위탁사무명·필요성·위탁내용, 선정방식, 적정성 검토결과 등
- 수탁자 공개모집 시 ‘배점 및 선정기준 등을 공개’ (안 제8조)
-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수 조정(안 제9조)
  - 11명 이하(중구의회의원2명, 공무원3명)  
→ 7명 이상 11명 이하(중구의회의원 1명, 공무원3명 이내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기준 신설(안 제10조)
- 협약 체결 → 계약 체결(안 제11조)
- 사무시설 운영 인계·인수 신설(안 제14조)
- 수탁기관의 의무 및 주의사항 신설(안 제15조)

8 (제227회-본회의 제2차부록)

- 주요사항 사업변경 시 사전 구청장의 승인 신설(안 제16조)
- 위탁계약의 해지 근거 마련(안 제21조)
- 제3자 위탁 등 금지(안 제22조)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제3항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영숙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그간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“재 위탁”, “재계약” 근거 마련 및 동의안 제출 기한·기준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민간위탁 업무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의 전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근 거 법 규

### 지방자치법

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 · 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· 검사 · 검정 ·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·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